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2월 26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안건명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년 2월 13일(수) 마포구청장

## 3. 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2월 18일(월)

##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제113조의3, 제1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의2, 제113조의3, 제114조, 제1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의2, 제61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1)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2012.4)
  - 2) 도시계획·건축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2012.10)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르고, 최근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이권 개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부패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미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절차 등 관련규정을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요지
  -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 => 20명 이상 25명 이하(안 제4조제1항)
  -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안 제4조제2항)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3)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 위원은 구청장이 5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3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당연직으로 한다.(안 제4조제3항)
  -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4조제4항)
  - 5) 3개 분과위원회(제1~제3분과 위원회)=>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이 경우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안 제7조)
  - 6)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안 제8조)
  - 7)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9조)

- 8) 회의 자료의 요구 및 설명 등 규정(안 제12조)  
- 이해관계인의 설명 및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9)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30일(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경과한 날부터 공개 규정(안 제14조제2항)
- 10)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 : 삭제(종전 조례 제14조~제19조)
- 11) 운영세칙 규정(안 제15조)

###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1) 본 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정비하였고
- 2) 안 제4조(위원회 구성) 제1항은 위원수를 종전 15명 이상 20명 이하를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도시계획 안건 심의 시 경험이 많은 여러분야 도시계획 관련 전문 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3)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전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심의 시 집행부의 추진계획이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 4)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계획관련 분야 전문 위원을 종전 구청장이 5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3 이상으로 하되, 다만,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여 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직접 제시함은 물론 타 위원들의 질문에도 위원회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집행부의 도시계획 추진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 5)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계획관련 분야 전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우호적인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각종 도시계획 관련 안건 심의시 이권개입의 여지가 있어, 이러한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개정안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횟수를 제한하였음.
- 6)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주는 등 위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징구하도록 하였으며,
- 7) 안 제7조(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제1~제3분과 위원회)로 세분화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할 사항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8) 또한 종전 조례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 안 제8조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 안 제9조 : 위원의 해촉
  - ▶ 안 제12조 : 회의자료의 요구 및 설명 등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미비했던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및 해촉규정을 보완하였고
  - ▶ 안 제14조 제2항 :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로부터 공개하도록 하여 도시계획 심의결과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규정을 둘으로써, 심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규정이 삭제되어 종전 마포구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였고
- 10)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시 심의기준 및 절차 미비로 인한 위원회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 ○ 검토의견으로는

- 1)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 시 승낙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고 위촉장을 주어 구성 초기부터 위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충립성을 강조하여 도시계획 심의 시 이권개입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사항에 따라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탄력성 있는 분과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 시 어느 한 전문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전문 분야의 위원

을 고루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계획 전문 분야와 관련이 없는 위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위원 선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정비하였고,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 [법률 제11579호, 2012.12.18, 일부개정]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종양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9.29]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9.25, 일부개정]

- 제134조(과태료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6.22] [법률 제8725호, 2007.12.2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적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5조 (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2.11.1] [서울특별시조례 제5376호, 2012.11.1, 일부개정]

**제58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1

### 지방행정 투명서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제도개선 관련 > (2012.9)

####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의결 투명성 개선 방안

- 연임제한 및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중복 위촉 금지 등 청렴성 검증절차 강화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위원회 참여 제한  
(지역 건설 관련업 종사자, 해당 상임위원회 지방의원 등)
- 위원장 민간 위촉, 제척 · 기피 · 회피 장치 마련, 회의내용 공개 확대

2

###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2012.9)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개선 방안

- 도시계획 심의절차 구체화 - 안건 처리기한 및 심의 반복 횟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영 후)
- 연임횟수 제한 및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 중복 위촉 횟수 제한
-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강화